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

[ ]종합유선방송사업자 [ ]위성방송사업자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관 15일

신고인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생년월일
	소재지(주된 사무소) (전화번호:)	

합병의 상대방 법인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생년월일
	소재지(주된 사무소) (전화번호:)	

합병 내용	

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합병계약서 사본 1부. 2.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1부. 3.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4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(신고인) → 접수 및 확인 → 신고서 처리 → 처리결과 통지 → 수 령

(처리기관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